

# 2021년도 상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 공고

기업주도의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2021년도 상반기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3일

**HRDK**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## 1. 사업목적

-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자격검정사업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의 기술향상 촉진

## 2. 모집대상

-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맞는 자격을 개발,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
-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을 공단으로부터 최초 확인받고자 하는 사업체

## 3. 자격 요건

### 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1조제2항】

-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
  2. 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
  3. 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·승급·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
  4.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
  5. 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
  6.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
### 【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】

영 제51조제2항제6호에서 “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.

1. 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 실적이 있을 것
2. 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(이하 “사업내 자격검정사업” 시행을 위한 규정(이하 “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” 이라 한다)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
3. 제2호의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실시규정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
  - 가.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
  - 나. 자격종목, 검정방법, 합격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
  - 다. 자격검정의 실시 횟수,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
  - 라. 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
  - 마. 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,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
  - 바. 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
  - 사. 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
  - 아. 자격 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
  - 자. 그 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

#### 4. 신고서 접수

- 접수기간: '21. 3. 3.(수) ~ 3. 26.(금)
  - 접수방법: 우편접수(단, 마감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힌 서류에 한함)
  - 접수주소: (우)4453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(교동)  
한국산업인력공단 6층 능력평가기획부
  - 구비서류
    -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고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)\*
    - 전년도(신고서 제출일을 기준 직전 보험회계연도를 말함)의 결산서류
    -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계획서\*
    -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
- \* 서식 다운로드: 큐넷(<http://www.Q-net.or.kr>) 접속 → 기술자격시험 → 자격정보 → 민간자격 → 사업내 자격제도 → 각종 서식 다운로드
- ※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되,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**【사업내 자격검정 심사기준(총괄)】**

심사요건	심사항목	심사기준
1.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	-사업주 -검정대상자	-사업주: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사업주의 적합성 -검정대상자: 자격검정 운영 사업주와 검정대상자인 근로자와 관련성
2.자격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	-검정내용	-검정내용: 해당 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성
3.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·승급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	-우대규정 -우대실적	-우대규정: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, 취업규칙, 인사규정 등 자격취득자 우대 규정 제정의 적합성 -우대실적: 기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, 승급 등 우대의 적합성 (규정에 따라 우대한 실적이 있어야 함)
4.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	-검정비용	-검정비용: 자격관리·운영 소요비용 확보의 적합성(검정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아야 함)
5.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	-검정목적	-검정목적: 자격관리·운영목적의 적합성 (비영리를 목적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함)
6.해당 자격에 대하여 2회 이상의 검정실적이 있을 것	-검정실적	-검정실적: 검정실적(계획수립부터 자격증 교부)의 적합성(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)
7. ‘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’을 제정하여 실시할 것	-규정제정	-규정제정: 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 제정의 적합성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4조제3호의 규정 내용을 모두 포함되어야 함)

**【사업내 자격검정 심사기준(사업내 자격검정실시규정)】**

심사요건	심사항목	심사기준
1.사업내 자격검정의 운영목적 및 자격종목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	-운영목적 -직무내용	-운영목적: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및 기술향상과 관련성 -직무내용: 해당 사업장의 직무 내용과 관련성
2.자격종목, 검정방법, 합격 결정기준 및 검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관한 사항	-자격종목 -검정방법 -합격기준 -응시자격	-자격종목: 해당 사업장의 해당 자격종목(등급)의 통용성 -검정방법: 필기검정, 실기검정 등 검정방법의 적합성 -합격기준: 자격수준, 등급 등과 적합성 -응시자격: 자격수준, 등급, 교육 과정 등과 적합성
3.자격검정의 실시 횟수, 시기 및 장소에 관한 사항	-시행횟수 -시기 -장소	-시행횟수: 시행계획 수립, 시행 횟수의 적합성 -시기: 횟수에 따른 시행시기의 적합성 -시행장소: 응시대상자, 횟수 등과 적합성
4.사업내 자격검정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에 관한 사항	-사업운영 조직	-운영조직: 보고체계,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 운영 등의 적합성
5.자격검정을 실시하는 경우 출제, 채점 및 감독에 관한 사항	-출제 -채점 -감독	-출제: 출제위원 위촉, 출제방법, 문제선정 및 문항수 등의 적합성 -채점: 채점위원 위촉, 채점방법 등의 적합성 -감독: 감독위원 위촉, 감독자 교육 등의 적합성
6.합격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	-자격증서 -자격취득자 등록 -교육훈련	-자격증서: 합격증서 교부절차, 증서 내용 등의 적합성 -자격취득자 등록: 자격취득자 등록의 적합성 -교육훈련: 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 훈련 방법, 절차 등의 적합성
7.공정한 검정의 실시 확보에 관한 사항	-공정성	-공정성: 기회의 균등, 검정절차의 비밀유지 등의 적합성
8.자격취득자의 우대에 관한 사항	-자격취득자 우대	-자격취득자 우대: 보수, 승급 등 자격취득자 우대의 적합성
9.그밖에 자격검정 실시에 필요한 사항	-기타	-제1호에서 제8호까지 심사요건외의 내용에 대한 적합성

## 5. 신고 심사 및 인증기업 발표 일정

- (1차) 서류심사: '21. 3월 말
  - (2차) 현장심사: '21. 4월 2~3주 (서류심사 통과기업에 한함)
  - 인증기업 발표 및 확인증서 수여: '21. 5월 이내
- ※ 심사기업 수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## 6. 인증기업 혜택

- 사업체에 대한 사업내 자격검정 관련 상담 및 자문 등의 컨설팅 지원
  - 사업내 자격검정 확인증서 발급 및 인증패 또는 현판(택 1) 제공
  - '사업내 자격증' 내 고용노동부 및 공단 로고 사용 지원
  -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 사업체에 대한 포상
- ※ 포상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(연1회) 참가기업에 한 함
- 지원금 지원
    - 지원대상: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실시 사업체
    - 신청서 제출시기: '21년 4분기 [지원금 지원 심사계획 별도 공고]
    - 제출서류
      - ①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신청서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)\*
      - ②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결과보고서(검정일시, 장소, 인원 등 포함)\*
      - ③ 검정관련 경비에 대한 증빙자료
      - ④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
- \* 서식 다운로드: 큐넷(<http://www.Q-net.or.kr>) 접속 → 기술자격시험 → 자격정보 → 민간자격 → 사업내 자격제도 → 각종 서식 다운로드

- 지원내용

구분	검정개발비	검정운영비
지원 내용	사업내 자격검정 종목 개발에 소요된 임금, 수당, 외부 용역비, 검정장비 및 시설 제작·구입비 등	사업내 자격검정 실시·운영에 소요된 임금, 출제·채점·감독수당, 검정재료비, 검정시설·장비 임차비, 유인물 제작비, 자격증제작비, 출장비 및 교통비 등
지원금액 및 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목별 검정개발비의 1/2 지급</li> <li>- 1,200만원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,500만원) 한도 내에서 1회 지급</li> </ul> <p>* 다만, 기존 검정개발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종료된 기업에서 NCS를 반영하여 자격개편 시 검정개발비의 1/2을 추가로 지급 가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종목별 검정운영비의 1/2 지급</li> <li>- 연간 1,000만원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,200만원) 한도 내에서 사업내 자격검정 인정을 받은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4년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3년간 지급(최대 연간 3,000만원)</li> </ul> <p>* 다만,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공동으로 사업내 자격검정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신고 확인 이후 10년의 기간 동안 지급</p>

- 지원방법: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금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금 지원

**【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지원금 우선순위】**

구분	내용
1순위	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신규인증기업
2순위	3년 이상 운영기업
3순위	3년 미만 운영기업

※ 개발한지 3년을 초과한 사업내 자격검정 종목에 대하여는 검정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음

※ 검정운영비 지원은 사업신고 확인을 한 날 이후에 시행한 자격검정운영에 한함

## 7. 기타사항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서(신청서)를 제출하거나 제출하여 인증된 경우 취소 처리함
-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신규인증과 관련하여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은 사업내 자격검정 컨설팅 신청서\*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
  - \* 서식 다운로드: 큐넷(<http://www.Q-net.or.kr>) 접속 → 기술자격시험 → 자격정보 → 민간자격 → 사업내 자격제도 → 각종 서식 다운로드
- 기타 문의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기획부 사업내 자격검정사업 담당자(채정경 차장, ☎052-714-8806)에게로 문의